

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

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3일

순 천 시 의 회 의 장



1. 조례안 목록

-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입법예고 기간 : 2019. 12. 3. ~ 12. 9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9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 · 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이메일

1) 주 소 :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(장천동, 순천시의회) / 우 : 57956

2) 이메일 : gowoon@korea.kr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(전화 : 061-749-495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. 끝.

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17호
----------	--------

○ 제출자 : 순천시장
○ 제출일시 : 2019. 12. 2.

1. 제안이유

-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조직개편(팀 이관)에 따른 기관 간 정원 조정
 - (이관) 여성가족과 방문복지팀 →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
 - (조정) 정원관리기관 간 5급(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) 정원 조정

2. 주요내용

○ (총 정원) 1,480명 / *변동없음

(단위 : 명)

구분	현행	개정	증감 내역			비고
			계	증원	감원	
총계	1,480	1,480	0	0	0	
정무직	1	1	-	-	-	
일반직	1,442	1,442	-	-	-	
별정직	1	1	-	-	-	
연구직	7	7	-	-	-	
지도직	29	29	-	-	-	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5. 관련부서 의견 : 해당 없음

6. 예산상황 : 해당 없음

7. 사전예고 결과 : 해당 없음

8. 사전협의(승인)사항
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2019. 11. 26.(여성가족과-24089호)
- 예산부서 심의필 : 해당 없음
- 규제개혁 심의필 : 해당 없음
- 법제부서 심의필 : 2019. 11. 26.(기획예산실-15649호)
- 법제부서 공고필 : 해당 없음

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 3

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

(단위 : 명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·동
총 계	1,480	1,480				
정무직 계	1	1				
시 장	1	1				
일반직 계	1,442	1,442				
3급	1	1				
4급	11	5	1	2	3	
5급	77	31	3	7	12	24
6급이하 계	1,353	1,353				
별정직 계	1	1				
6급상당이하 계	1	1				
연구직 계	7	7				
연구관	1				1	
연구사	6	6				
지도직 계	29	29				
지도관	2			2		
지도사	27	27			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[별표 3]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(단위 : 명)							[별표 3]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(단위 : 명)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읍·면·동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 기관	사업소	읍·면·동
총 계	1,480	1,480					총 계	1,480	1,480				
정무직 계	1	1					정무직 계	1	1				
시 장	1	1					시 장	1	1				
일반직 계	1,442	1,442					일반직 계	1,442	1,442				
3급	1	1					3급	1	1				
4급	11	5	1	2	3		4급	11	5	1	2	3	
5급	77	<u>32</u>	3	<u>6</u>	12	24	5급	77	<u>31</u>	3	<u>7</u>	12	24
6급 이하 계	1,353	1,353					6급 이하 계	1,353	1,353				
별정직 계	1	1					별정직 계	1	1				
6급 상당 이하 계	1	1					6급 상당 이하 계	1	1				
연구직 계	7	7					연구직 계	7	7				
연구관	1				1		연구관	1				1	
연구사	7	7					연구사	6	6				
지도직 계	29	29					지도직 계	29	29				
지도관	2			2			지도관	2			2		
지도사	27	27					지도사	27	27				

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118호
----------	--------

○ 제출자 : 순천시장
○ 제출일시 : 2019. 12. 2.

1. 제안이유

- 현행 지원 기준인 1만원 이하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로 지원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조항 정비

2. 주요내용

- 제2조제1호
 - “월 1만원 이하”를 “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”로 개정
- 제3조 각호 외 부분
 - “1만원 이하”를 “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”로 개정
- 제3조제1호부터 제3호
 - 1.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
 -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 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관련법령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

5. 관련부서 의견 : 해당 없음

6. 예산상황 : 비용추계서 첨부

7. 사전예고 결과

- 입법예고 : 2019. 11. 21. ~ 11. 28.(결과 : 의견 제출자 없음)

8. 사전협의(승인)사항
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2019. 11. 26.(여성가족과-24091호)
- 예산부서 심의필 : 2019. 11. 20.(노인장애인과-50466호)
- 규제개혁 심의필 : 해당 없음
- 법제부서 심의필 : 2019. 11. 21.(기획예산실-15450호)
- 법제부서 공고필 : 2019. 11. 21.(순천시 공고 제2019-2101호)

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월 1만원 이하”를 “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”로 한다.

제3조 각호 외 부분 중 “1만원 이하”를 “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

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저소득 세대”라 함은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</u> -----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급여 지원대상)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순천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.	제3조(급여 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</u>	1. <u>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</u>
2. <u>장애인이 있는 세대</u>	2. <u>「장애인복지법」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</u>
3. <u>한부모 가족 세대</u>	3. <u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</u>

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3조(급여 지원대상) : 시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 이라 한다) 순천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(현행) 월 1만원 이하 → (개정)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 구분	합 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
총 비용(a-b)	-1,612,254	-303,676	-312,786	-322,169	-331,834	-341,789
세입(a)	-	-	-	-	-	-
세출(b)	1,612,254	303,676	312,786	322,169	331,834	341,789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별 구분	합 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
합 계	1,612,254	303,676	312,788	322,171	331,836	341,791
국 비	-	-	-	-	-	-
도 비	-	-	-	-	-	-
시 비	1,612,254	303,676	312,786	322,169	331,834	341,789

5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대상사업 :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사업기간 : 2020년
- 산 출 액(2020년) : 303,676천원
- 산출근거(2020년)
 -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(월)
 - 7,938원 × 3,188세대 × 12개월

6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7. 부서 의견 : 해당 없음

8. 작성자

-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과장 김청수(☎ 749-6166)
노인복지팀장 양영심(☎ 749-6289)